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1. 主要 法的根據

◎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시지역

도시계획 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 촉진법을, 원전개발사업 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원전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적용하는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준도시지역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낙농지대인 경우에는 낙농진흥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준농림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 규모이상인 공장, 건축물, 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 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부 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음의 행위는 할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해 지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 명칭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

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한다.

가.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나. 영림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목, 죽의 채취

다. 객토, 매립, 준설 또는 간척

라.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가축의 방목

바. 야생 동·식물(수산 동·식물을 제외한다)의 보호 또는 채집

사. 흙, 모래, 자갈, 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②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의 효력이 발생된 후 5년 이내에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에 대하여 제1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토이용계획의 효력발생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고시 당시 당해 용도지역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의 시설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 변경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허가·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등을 계속할 수 있다.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중 1종 사업장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 가운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

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과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촉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중 1종 사업장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과 동표중 5종 사업장 가운데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중 축산물 공판장,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및 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를 채취(선별·세척·파쇄를 포함한다) 하기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건시설 및 교육 연구시설로서 배출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화학제품 제조시설(석유정제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 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 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 금속, 가공 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1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시설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시설

마. 섬유 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3. 면적이 3만㎡ 이상인 절토·성토 또는 정지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농지조성, 초지조성, 영림행위, 골재 및 토석채취 또는 채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부지면적이 3만㎡이상인 시설.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 다만,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포함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 유해물질 또는 수질환경 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을 제외한다)의 증설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기존의 공장으로서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행위

나. 199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장부지 면적의 50%이내의 범위안에서 증가되는 총 면적이 3만㎡이하의 증설인 경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과 부지면적이 3만㎡를 초과하거나 증설로 인하여 부지 면적이 3만㎡를 초과하게 되는 공장의 증설은 1회에 한한다)

다. 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오염물질 배출량의 50%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증설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농업 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기존 도로구역이나 접도 구역안에서의 도로 확장의 경우를 준농림지역의 지정목적에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 공중 위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숙박업 :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 시키는 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목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공유자,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

국토이용 관리법 제15조(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